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227호

「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구성내용 중 현장조치결과, 권고 및 향후 조치 부분을 구체화하고, 청렴서약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건설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 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
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
- 전자 우편 : heoyeonhee@korea.kr
- 팩 스 : 044-201-5553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에서 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(전화 044-201-3562, 356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